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규제혁신심의회’ 신설해 체계적 추진
기업이 건의한 사항 민간 중심으로 검증·심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으로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2018년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 책임 방식으로 심의하여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적하였다.

소관 부서는 규제를 그대로 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자체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하였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4월에는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규제사무 17건)에 대하여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규제사무 28건),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규제사무 349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16건의 규제는 아래와 같다.

건의과제 재검토 심의 결과, 수용 현황(16건)

연 번	건의과제명 (건의내용)	심의 결과 (수용)
1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규정 개선 -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재입국 가능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수용> ●재입국 기간 단축 개선 방안 마련 및 심의회 의결('19년), 법률 개정('20년)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외국인 부적응·이탈 방지 등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외국인노동자 고용기관에 제출토록 하거나, 회사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숙소) 등을 사전에 외국인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및 원스톱 시스템 마련	<수용> ●고용센터에 신청한 정보가 고용정보원, 인력공단 등 관련기관에 공유되어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 중 (법무부와 일원화 시스템 연계, '14년~) * 외국인 근로환경(숙소) 정보 제공을 위해 고용허가신청 시 의무 부과('18.4월) ●한편, 사업장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추진('19년, 시행규칙 개정)
3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개선 - 섬유업종(3D산업)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수용> ●'19년부터 섬유업종의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중
4	중앙-지방 일자리사업 중복 해소를 위한 일모아시스템 개선 - 일모아시스템에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용> ●'18년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자리사업 목록을 확정, 각 지자체에 공유하여 일자리사업인지를 지자체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
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 최초 1회 신청 후 신분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지원	<일부수용(대안마련)> ●재직 및 임금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신청 절차는 필요 * 지원금 신청시 1인 20만원 기업 지원 ●다만,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 서류 간소화('19년), 온라인 시스템 마련 추진('20년~) 등 개선
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정, 고용부 환급교육인정 변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 가능토록 개선	<수용> ●환경부 최소 방문 교육 인원 변경(70→60명), '19년 현재 환급 적용(고용부)
7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수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등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추진, '19.2.19.) ●의원안 발의(한정애, '19.3.8.) 입법 추진 중
8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 → 1개월', '3개월 → 1년'으로 각 확대	<일부수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등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추진, '19.2.19.) ●의원안 발의(한정애, '19.3.8.) 입법 추진 중
9	재직자퇴직연금 사업 대상 확대 - 근로복지공단의 재직자 퇴직연금 사업 대상을 300인 이하로 확대	<일부수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한정애 의원 100인 이하, 임이자 의원 30인 이하) 중이며, - 현재 '30인 이하'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노력

연 번	건의과제명 (건의내용)	심의 결과 (수용)
10	산재발생 시 재해발생 보고절차 변경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재해발생 신고의무 면제하거나 부상·질병 정도에 따라 보고기한 차등	<일부수용> • 산재요양신청은 산재발생보고와 목적이 달라 대체는 불가 • 다만,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정도에 따라 보고대상을 차별화(완화)하거나, 산재 온라인 관리 방식 등 마련 ('19년~)
11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중복문제 해소 - 부처별 안전관련 법령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총괄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일부수용> • 각 법령의 보호법익이 달라 규제대상 내용이 다르므로 안전관련 총괄법령 제정은 불가 • 다만, 안전관련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법령의 중복여부, 개선방법 등 파악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은 필요 * 다수부처 관련으로 규제관련 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필요(건의)
12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대상 작업범위 축소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내 인용된 법적근거 명확하게 인용	<수용> •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범위를 해당작업 및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엄격히 제한('19.1월 산업법 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개정 법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시달할 예정('19.5월)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4천만원 이상 ⇒ 모든 건설공사)	<일부수용> • 계상되는 안전관리비가 매우 적은 소규모까지 모두 포함하면 추가되는 행정절차 및 범위반에 따른 불이익,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 예) 공사금액 300만 원 → 안전관리비 6만 원, 사용내역서 미작성 과태료 100만 원 •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을 일정 수준(2천만 원 이상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 공사금액 2,000만 원, 안전관리비 41만 원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장기적 검토 필요
14	밀폐공간 제외대상 추가 요청 -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질식위험이 없는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일부수용> •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는 시설을 밀폐 공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질식의 위험이 없음을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안전보건조치 일부 면제 마련
15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인기관 인증 확인 의무화 -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등을 공인기관에서 검증하여 제공	<일부수용(대안마련)> • 모든 MSDS*를 인증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소요, 행정력 한계 등으로 불가능 * 기존 MSDS 129만여 종(매년 9만여 종 신규 생산) •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MSDS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신뢰도 평가 사업**을 강화 추진 * 공단에서 2만여 종 제공(매년 1천여 종 지속 추가) ** 매년 특정물질량의 MSDS 및 시료를 수거, 성분분석 등을 통해 MSDS 내용의 적정성 평가
16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완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이 되도록 대다수 기업에서 산 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황산, 염산의 PSM 대상 농도 및 규정량 기준을 완화	<일부수용> • 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염산, 황산의 농도규정을 상향(염산, 황산 중량 10%~20%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내도급승인 대상, 특고종사자 보호,
발주자·대표이사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다만, MSDS관련규정은 '21.1.16)이며,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 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과 확인, '정부24'에서도 가능

큐넷과 정부24에서
자격증 진위확인 등 가능

5월 29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도 국가기술자격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제공하던 '국가기술자격 단체진위확인 서비스'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진위확인'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등의 업무 시 자격취득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 482개 종목에서 530개 국가기술자격 전체로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단체 회원의 경우, 온라인에서 1회 요청 시 20명만 가능했던 진위확인도 5,000명까지 늘어난다.

진위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시간은 최대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와 '상장형 자격증'발급 서비스도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취업원서 등 접수 시 필요한 자격정보에 대해 통합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취득한 자격증도 무료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